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온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온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천이용허가 범위 확대,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마련(안 6조제3항 신설)

-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4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 2) 물리탐사장비 등 6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24조 신설)

- 1) 위반행위의 횟수 계산방법, 감경사유 등을 규정
- 2)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다. 원상회복의 예외 및 절차 구체화(안 14조의2 및 14조의3 신설)

- 1) 온천자원관측시설 설치하는 경우 등 원상회복 예외사항을 규정
- 2) 원상회복에 대한 서면 통지, 원상회복 방법 등을 규정

라. 온천이용허가의 범위 확대(안 17조제5항제9호 신설)

-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소를 온천이용허가 범위에 포함

마.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22조제1항제6호 개정)

- 1) 최근 수질검사 항목에 레지오넬라균, 유리잔류염소가 포함됨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을 2만원 이하에서 7만원 이하로 조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입법예고전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예정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중

대통령령 제 호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과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제1항의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개발허가를 받아 지하수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4.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을 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통지(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통지를 말한다) 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기간 내에 제3항에 적합하게 원상회복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제18조제1항의 “온천에 관하여”를 “온천의 온도, 성분 등에 관하여”로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의 “2만원 이하”를 “7만원 이하”로 개정한다.

제24조 및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응용지질·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1)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화학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고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13조제2항 또는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500	500	50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1호	20	40	6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150	150	15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3호	60	60	6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①~② (생략) 〈 신설 〉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①~② (현행과 동일)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 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①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 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 신설 〉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① ----- -----법 제12조제2항----- ----- ----- -----.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 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개발허가를 받아 지하수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현행	개정안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4.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 정하는 경우
〈 신설 〉	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 회복을 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재 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 (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통지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통지를 말한다) 받은 기간이 끝나기 3

현행	개정안
	<u>일 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u> ③ 법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 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

현행	개정안
	<u>회복의 명령을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기간 내에 제3항에 적합하게 원상회복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u>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④ (생략) ⑤ (생략) 1. ~ 8. (생략) 〈신설〉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①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① ----- ----- 온천의 온도, 성분 등에 관하여 ----- -----.
제22조(수수료) ① (생략) 1. ~ 5. (생략)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신설〉	제22조(수수료) ① (현행과 동일) 1. ~ 5. (현행과 동일) 6. ----- --- 7만원 이하-----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연 락 처	(044) 205 - 3522